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재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0838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6. 5.

발의자 : 유재중 · 이철규 · 이진복
윤상직 · 윤재옥 · 유의동
이양수 · 김세연 · 추경호
성일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심근경색,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의 8.3%가 1년 안에 심근경색이 재발하여 사망한다고 하는바,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할 것임.

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에는 유병력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, 현행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도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재활율, 재발율, 생존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, 유병력자의 치료 및

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함(안 제7조의2 신설).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유병력자 관리 및 지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 발병하였던 사람(이하 “유병력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재발 여부, 후유증 등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유병력자의 조기재활율, 재발율, 생존율, 후유장애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병력자 경과 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하여 유병력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진료기록의 관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른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유병력자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유병력자 경과 확인 및 정보 관리,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시책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i)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7조의2(유병력자 관리 및 지원)</p> <p>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 질환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 발병하였던 사람(이하 “유병력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재발 여부, 후유증 등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유병력자의 조기재활율, 재발율, 생존율, 후유장애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병력자 경과 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하여 유병력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진</p>

료기록의 관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른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유병력자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유병력자 경과 확인 및 정보 관리,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시책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